

# 제안서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2017. 12. 12.

## 1. 제안 이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7. 11. 1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공고(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30호)된 바, 위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추가,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행위의 예외조항 신설, 동물보호 센터 지정 및 안락사 주체 등의 확장,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정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모법인 동물보호법의 위임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처벌의 예외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함으로써 결국 동물보호법의 입법 및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저해하는 한편 규제되어야 할 행위를 제대로 포섭하고 있지 못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안의 수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2. 제안 내용

### 가. 요지

개정안의 내용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안 제4조 제4항)'는 모법의 위임 내용에 따라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설령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개정안의 내용은 모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전혀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안 제4조 제4항 제3,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아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어 위임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관련한 시행규칙-안 제4조 제1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바, 아래 나.항의 '동물학대 처벌규정 관련' 부분에

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면서(안 제4조 제6항) ‘촬영·체험·교육 등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중 특히 ‘체험’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영리 목적 동물대여의 대부분의 경우가 체험을 위한 것이라는 점, 단서를 통하여 관리 인력 기준을 둔다고 하더라도 ‘체험’의 경우 개인 대 개인 등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위 단서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 체험을 포함시킬 경우 영리 목적 동물대여를 금지한 모법의 취지가 물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외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이하 다.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나. 동물학대 처벌규정 관련

개정 동물보호법(법률 제14651호, 이하 같다.)

제2조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후략)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이하 같다.)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2.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③ 법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⑤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 1) 규정의 체계

동물보호법 제8조 규정을 보면 제1항에서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4호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행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호 및 제3호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과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특정한 ‘방법(행위 태양)’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 여부는 불문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소’로 한정하여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4호는 “그 밖

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제2호와 같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아닌, 행위의 ‘목적 내지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학대 또는 상해행위를 금지하면서, 제1호와 제2호에서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즉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중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와 제4호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하여, 행위의 ‘목적 내지 이유’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및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관련하여 모법인 동물보호법이 위임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서는 각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포섭하지 못한 동물학대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중략) 등 정당한 사유’를 일일이 법률에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정당한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한 것입니다. 이는 법률의 문언 자체로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뿐 아니라 법기술적인 면에서 모법의 위임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의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라고 규정하여, 결국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라는 정당한 사유를 열거한 것을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관련(안 제4조 제4항)

기존의 시행규칙은 제4조 제4항에서 모법이 위임한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는 대신,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자체를 열거하면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와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2호)" 단 두 조항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시행규칙은 법에서 '학대행위'를 규정하는 한편,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처벌할 수 없는 '예외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모법의 내용과 체계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위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이 예시하고 있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에 대하여도 어떠한 언급이 없고, 제1호는 일견 '정당한 사유'로 해석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를 규정하면서도 이를 처벌의 예외인 '정당한 사유'로서 규정하지 않고 제1호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 방지와 관련 없는 대부분의 동물 상해 행위의 적용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2호는 '정당한 사유'의 유형을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의 구체적 방법을 열거하여, 처벌의 예외 '사유'를 정하라는 모법의 위임 내용에 명확히 배치됩니다.

강조하자면, 모법은 '정당한 사유', 즉 행위의 태양이 아닌 '이유'를 규정하라고 위임하였음에도 시행규칙은 이에 관하여 침묵하는 한편, 아무 근거 없이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등과 같은 행위의 태양으로 학대 행위를 '한정'하였으며, 그 결과 동물을 다치게 하는 대다수의 학대 행위를 포섭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동물을 때려 상처를 입히는 경우<sup>1)</sup>, 이는 응당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포함되어 처벌되어야 하고, 그것이 법률의 제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

1)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2호의 '물리적 방법'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열, 전기, 물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물리적 방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칙에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이 또한 매우 한정적으로 위 두 가지 사항만 열거함으로써) 위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여전히 ‘정당한 사유’가 아닌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제3호)”,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4호)” 등과 같이,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모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모법의 위임 사항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여, 시행규칙이 열거한 정당한 사유 외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당연히 모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④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u>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④ --- ----- “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u>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u>질병의 예방이나 치료</u>

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u>2.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의 방지</u>
<신 설>	<u>3. 재산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급박한 경우</u>

모범이 직접적으로 예시한 정당한 사유로서 ‘수의학적 처치’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로 반영하였으며,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의 방지’를 포함하였습니다. 이 외 ‘재산상 피해’의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생명 없는) 재산’과 ‘(생명을 가진) 동물의 신체’가 동일한 가치로서 형량 되기 어렵다고 판단, ‘다른 방법이 없는 급박한 경우’라는 보충적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단순히 재산의 피해 방지 목적을 위한 동물의 상해가 정당화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개정이 큰 변화로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볼 경우,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구체화하되 동물학대 행위를 충분히 포섭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④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u>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④ --- ----- “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u>



<p><u>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p><u>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u>”-----.</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생략)</p>	<p><u>2.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u></p>

개정안의 제 2내지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물 상해 행위의 ‘태양’을 규정한 것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며, 신설되는 제2호에는 모법이 예시한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를 반영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을 ‘정당한 사유’로 하되, 시행규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략)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이유 없는 동물 상해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관련 (안 제4조 제1항)

상기 언급한 것과 동일한 논리로, 모법인 동물보호법은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라고 규정하여(제8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으로 하여금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다른 조항들이 포섭하지 못하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반면, 예외적으로 시행규칙이 열거한 ‘정당한 사유’를 가진 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충분히 해석됩니다.

그런데 기존 시행규칙은 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는 “1.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2.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위 두 가지만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즉, 제1호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 방지’라는 실질상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정당한 사유 규정과 함께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까지(이는 모법이 위임한 사항이 아닙니다) 규정함으로써,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동물을 죽이는 대다수의 행위를 포섭하지 못한 바, 예를 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잔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이는 응당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처벌되어야 함에도, 시행규칙의 어떠한 내용으로도 이를 규제할 수 없었습니다. 위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아닐뿐더러,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수의학적 처치’에 관한 예외 규정에 대하여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포함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중 처벌에서 제외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를 열거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 <u>농립</u> <u>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u>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 ----- “ <u>농립축</u> <u>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u>

<p><u>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u>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p><u>한 사유</u>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를 말한다.</p>
<p>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 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p>	<p><u>1.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u></p>
<p>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 우</p>	<p><u>2.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 접적 위협의 방지</u></p>
<p><u>&lt;신 설&gt;</u></p>	<p><u>3.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에 따른 경우</u></p>

모법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모법이 구체적으로 예시한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를 제1호에 추가하였습니다. 제2호는 기존 시행규칙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다만 동물의 ‘생명’은 ‘(생명 없는) 재산’과 비교형량하여 더욱 우위에 있는 가치라고 판단,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의 생명 침해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특별법에 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궁극적으로 이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동물 생명 침해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개정이 큰 변화로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볼 경우,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구체화하되 동물 생명 침해 행위를 충분

히 포섭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u>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 ----- “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u> ”----- -----.
1. (생 략)	1. <u>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u>
2. (생 략)	2. <u>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외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u>
<신 설>	3. <u>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에 따르는 경우 외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u>

기존 시행규칙 제2호는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학대 행위의 ‘태양(유행)’을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 내용에 배치되며,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는 그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당한 사

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반면,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하여 제1 내지 3호를 통틀어 문언 그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호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의 방지<sup>2)</sup>’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제2호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sup>3)</sup>’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제3호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령에 따르는 경우’ 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였습니다.

### 라. 동물 대여 금지 관련

**동물보호법**

제8조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제3호를 신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동물을 대여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학대, 상해 등 동물의 복지 침해 등)을 예방하고, 생명을 물건과 같이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입니다. 다만 법률은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여 예외를 규정한 바, 이는 장애인 보조건의 특수성(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훈련된 특수한 성격의 개를 빌려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시행규칙에서 예외를 규정하더라도 본문의 입법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장애인 보조건을 대여하는 경우’ 외에도 ‘촬영, 체험, 교육 등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등’을 붙임으로써 예외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대

2) ‘재산의 피해 방지’ 부분은 상기 언급한 이유로 삭제함.

3) 모법이 위임한 내용임.

부분의 경우가 이러한 ‘체험’에 속하는 바, 개정안이 이처럼 ‘체험’을 예외로 포함시킴으로써 법률이 동물 대여를 금지하는 취지를 거의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여 시간 동안 관리 인력에 의해 제3조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단서는, 이미 제3조 자체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 체험 목적 대여의 경우 대부분 개인 대 개인으로서 소규모로 이루어질 것인 점,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대여자 본인을 포함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만일 대여해 간 자 본인을 포함한다면 관리기준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제3자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규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 및 위와 같은 인력이 제3자라면, 대여 시 마다 인력을 파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체험 목적 동물 대여의 문제점을 전혀 보완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체험’ 부분은 동물 대여 금지의 예외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결국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행	개정안
<p>&lt;신 설&gt;</p>	<p>⑥ 법 제8조제5항제3호 단서에  <u>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u>따른 장애인보조건을 대여하는 경우</u></p> <p>2. 촬영, 교육을 위해 동물을  <u>대여하는 경우. 다만, 대여하는 시간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의해</u></p>

	<u>제3조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u>
--	------------------------------

### 3. 결 론

이번 동물보호법의 개정은 ‘동물’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의 개선과 동물의 지위 향상, 그럼에도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 등을 배경으로 하여, 어렵게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뜯장 신규 설치 금지’와 같은 발전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다룬 부분에 관하여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제안서의 내용을 참작하시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동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내고, 실질적으로 동물보호와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입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